#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0년 제7차 직원채용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 9. 4.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채용분야

### Ⅱ 공개채용

구분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업무 내용	우대 사항	
정규직	심사직 다급 (시건총괄팀)	1명	• 조정위원회 업무 기획 및 지원 • 조정위원회 제규정 관리 • 조정 • 중재 사건 배당지원 등 • 일반 사무행정 등	* 공통우대사항, 법률 및 의료 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및 손해배상액 산정, 심사 보고서 작성 등 심시업무 기능자 우대	
	조사직 다급 (수탁감정팀)	1명		*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 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우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일반경쟁)	전문업무직 다급 (심시즈)	1명	<ul> <li>・분쟁 조정에 필요한 과실 및 인과 관계 판명, 손해액 산정 등</li> <li>・심사보고서 작성 등</li> <li>※ 계약기간: '20.11.1.~'21.4.30.(6개월)</li> </ul>	* 공통우대사항, 법률 및 의료 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법무법인 및 분쟁해결기관 유사업무 경력자 등 우대	

구분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업무 내용	우대 사항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일반경쟁)	전문업무직 라급 (조시진)	1명	<ul> <li>・사실조사, 의견진술 청취</li> <li>・조사보고서 작성 및 감정서 작성 지원 등</li> <li>・감정단 업무 지원 등</li> <li>※계약기간: 20.11.1.~ 22.10.30.(24개월)</li> </ul>	* 공통우대사항 및 간호사, 의무기록사 등 의료 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우대
	일반업무직 라급	1명	<ul> <li>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신청 사건 접수 등</li> <li>일일상담실 운영 및 이첩민원 상담, 상담센터 관리</li> <li>일반 사무행정 등</li> <li>※계약기간: '20.11.1.~'21.4.30.(6개월)</li> </ul>	* 공통우대사항 및 간호사, 의무기록사 등 의료 관련 전문자격 소지자 우대

#### (공통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대상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공공기관, 분쟁해결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근무

####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계약기간 완료 이후 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단. 휴직자 조기 복직 시 계약기간 내라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2 제한경쟁채용

구분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업무 내용	기타 사항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제한경쟁)	지원업무직 라급	1명	• 의료분쟁조정 절차 관련 문서 송달 • 감정부 회의 준비 및 진행 지원 • 사건기록 업무시스템 등재 및 기록물 편철 등 일반 사무행정 ※계약기간: '20.11.1.~'23.5.31.(31개월)	※필수 지원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우대사항)

- 필수 지원 자격 외 다른 우대사항(보훈, 지역인재 등) 해당 시 가장 높은 가산점 한 가지만 부여
- 공공기관, 분쟁해결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근무
- 병원행정 관련 전공자 우대

####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계약기간 완료 이후 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단. 휴직자 조기 복직 시 계약기간 내라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다음, 의료중재원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인사규정 제13조>

-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10.「의료법」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인사규정 제61조>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직급	채용자격기준		
심사직 다급 (정규직)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 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사직 다급 (정규직)	<ol> <li>약사・한약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재직했거나 의료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li> <li>의료기사・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li> <li>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 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보험관련기관에서 심사관련 분야의 5급직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li> <li>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li> </ol>		
전문업무직 다급 (심사직-육아휴직대체)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 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업무직 라급 (조사직-육아휴직대체)	1. 간호사 면허 취득자 2.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면허 취득자 3.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 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직급	채용자격기준
일반업무직 라급 (육아휴직대체)	<ol> <li>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li> <li>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li> <li>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li> </ol>
지원업무직 라급 (육아휴직대체 — 장애인)	1.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한경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채용자격기준 해당여부는 응시지원서의 경력사항에 기재한 내용과 서류심사 합격 후 제출한 증명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며, 자격 미달자는 면접 또는 임용취소

## 4 근로조건

- □ (채용구분)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근로)
- □ (급여수준) 우리 원 보수규정에 따름
- □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 본원

## 5 응시원서 접수 및 채용심사 방법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 9. 4.(금) ~ 9. 18.(금) 18:00시까지 (15일간)
- 응시지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 채용페이지(k-medi.recruiter.c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방식
  - ※ 종료시간 이후 응시원서 접수 웹페이지 자동폐쇄
  - ※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1차	서	류스	<u>]</u> 시	L
1		/ \ I	71 7	† / Y	

- 제출한 서류의 지원동기, 경력사항, 응시분야에 대한 전문성, 직무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 10. 7.(수) ※ 상기일정은 예정일로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 □ 2차 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60%+직업기초능력20%+기타20%)

- 1차 전형 서류심사를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전문성, 성취지향성 등을 종합심사
- 면접(예정)일 : '20. 10. 15.(목) ~ 10. 22.(목) 중 1일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일정 확정 후 발표 예정이며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예정일: '20. 10. 23.(금)※ 상기일정은 예정일로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
- □ 임용예정일 : '20. 11. 1.(일) → 11. 2.(월) 출근

## 5 가산점

-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 제한경쟁의 경우 해당 필수 지원 자격에 대한 가산점 미부여
-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한 경우 우대
- □ 2014. 7. 1. 이후 우리 원에 입사한 청년인턴 중 성적 우수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우대
  - ※ 가산점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가산점 한 가지만 부여

- □ 응시서류: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정양식)
- □ 증명서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업로드, 지원자는 사전 준비 필수)
  - ※ 증명서류는 사전 준비 필수 (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시스템에 전자 파일로 업로드하며,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 증명사진(JPG파일, 크기:3×4cm, 파일명은 지원분야\_성명)
  -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수료)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 보건학, 법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심사직, 조사직에 한함),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대상자 필수
      - \* 분교의 경우 분교 졸업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추가제출
  - 경력증명서 (관련 수행업무 명시)
    - \* 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 지원서 작성 시 경력사항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경력(재직)증명서 사전 발급 후 작성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 \* 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 및 면허
  - 병역확인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위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며,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면접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채용 심사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으므로 <u>각종 증명서 상</u>의 주민 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처리 가능하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 ※ 제출된 자료는「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응시원서와 증명서류의 **경력사항 불일치** 및 **기재착오·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u>입사지원 당시 기재한 경력만을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임용 시 연봉에</u> 반영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채용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 □ 자기소개서 등에 <u>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u>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u>개인정보를 직·</u> 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채용페이지에서 지원자가 "최종지원"을 한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오니 각별한 유의 바랍니다.
- □ 최종합격자 공고 후 경력조회,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합격을 취소합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6조제5항에 따른 부정합격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채용 관련 유선 문의>

○ 인사담당자 : 02-6210-0134

○ 문의 시간: 평일 09시~12시, 13시~18시